붙임 2

인사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
-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고 5년, 해임처분을 받고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
- 신체검사 불합격자
-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,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-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